

# 추 가 약 정 서

(기업구매자금대출용)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20    년    월    일

인감대조

본 인

①

주 소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 이라고 합니다)과의 기업구매자금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체결한  
년 월 일자 여신한도거래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다음사항을 약정합니다.

## 제1 조 (대출의 신청)

- ① 대출의 신청은 서면 또는 컴퓨터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신청하기로 하되,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외서(컴퓨터 등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 의한 지급청구가 은행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
- ② 인터넷결제방식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개별대출금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매업체의 판매대금추심외서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되 판매대금추심외서에 의한 지급청구가 은행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

## 제2 조 (개별 대출의 실행 및 기간)

- ① 은행은 기업구매자금 지급승인(거절)통지서의 대출예정일에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고 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 약정서상 본인이 신고한 결제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자금결제 또는 대출실행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선지급한 경우 환어음 또는 판매 대금추심외서상의 차액은 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 약정서상 본인이 신고한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3 조 (대출이자율 및 이자지급방법 등)

- ① 대출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은 “원약정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 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아래의 납입방법중 선택하기로 합니다.
  1.  대출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 합니다.(만기일괄선취방식)
  2.  최초이자율은 대출실행일에, 익월 해당일까지 선지급하고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단위로 선지급 합니다.(매월 선취 방식)
  3.  최초이자율은 대출실행일의 익월 해당일에 지급하며,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최종계산일의 익일부터 1개월 단위로 후지급 합니다.(매월 후취 방식)
 다만, 상기 제1호 또는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는 본인 의사확인을 위하여 동 선택방식을 기입키로 합니다.

(예 : 만기일괄선취방식에 동의 합니다 또는 매월선취방식에 동의 합니다.)

**제 4 조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

대출만기시 또는 이자납입시 은행은 본인의 기업구매자금 결제계좌에서 자동인출 결제 합니다.

**제 5 조 (면책사항)**

- ①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가 은행에 전달된 경우, 은행이 이를 선의 또는 무과실로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 은행에게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니다.
-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전산장애 및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니다.

**제 6 조 (효력)**

이 약정서, 원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하고, 다음으로 원약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제 7 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 (인)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음.

본 인 : (인)

본 인 : (인)